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운영지침

㈜ 오 리 온

제 1 조 【 목적 】

이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'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'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오리온(이하 "당사")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 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,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 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하도급 계약서의 발급]

- 1.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(이하 '제조 등'이라 함)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·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.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·변경 서면을 작성·발급한다.
- 2.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다.
 - ① 위탁일,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 및 단가, 목적물 등을 납품·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,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, 하도급 대금(건설공사의 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 등)과 지급 방법·지급 기일
 - ②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, 수량, 제공일,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
 -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
- 3.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다.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.
- 4. 다음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 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 - 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
 -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(Fax). 기타 전기·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

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
-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,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·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
-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당사가 협력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(offer sheets)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

5. 특칙

- ①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(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)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, 하도급대금, 위탁받은 일시,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,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력업체는 [별지 1] "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"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한다. 이 경우, 당사는 [별지 2] "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"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,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(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제 3 조 [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]

- 1.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"위탁을 할 때"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.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·운송·검수·반품 등의 거래조건, 규격·재질,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, 단가.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"위탁을 할 때"로 본다.
- 2.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,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, 감액 금액, 공제 등 감액 방법,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3.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.
- 4.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, [별지 3] "하도급 대금 감액서면"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5.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.

제 4 조 [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]

- 1.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.
- 2.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*, 권리귀속관계*, 기술자료의 대가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기타 당사의 기 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.
 - *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: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
 - * 권리귀속 관계: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, 상호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,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,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
- 3.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목적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, 권리귀속관계,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4.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, 가급적 [별지 4] "기술자료 요구서" 양식을 사용한다.
- 5. 상기 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 4 조 2 항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.
- 6. 다음 각 항에서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 -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 사항, 권리 귀속 관계,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[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]

- 1.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,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(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)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.
- 2.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(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) 협력업체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.

제 6 조 [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]

- 1.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.
- 3.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.
 -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
 -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
 -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
- 4.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[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내역서 발급]

- 1.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한다. 다만,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.

제 8 조 [서면발급 방법]

 서면 발급시에는 당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(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.

- 2.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.
- 3.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-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: 전자메일)
 -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 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: 웹)
 -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제 9 조 [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]

1. 당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이 운영지침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(서류의 보존) 제 1 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.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.

No	보존 대상 서면	비고	
1.	기본계약서(추가•변경 계약서 포함)	하도급법 제 3 조	
2.	하도급계약 확인서면	하도급법 제3조 제6항	
3.	감액 서면	하도급법 제 11 조	의무
4.	기술자료 제공 요구서	하도급법 제 12 조의 3	발급
5.	목적물 등 수령증명서	하도급법 제 8 조	서면
6.	검사결과 통지서	하도급법 제 9 조	
7.	계약변경 내역 통지서	하도급법 제 16조	
0	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
8.	된 서류	제 2 호	
	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	시해려 제 6 포 제 1 하	
9.	(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·금액 및 만기일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
	포함)이 기재된 서류	제 3 호	주요
	선금금 및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,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하도
10.	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	지영당 제 0 조 제 1 영 제 4 호	급
	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	세 4 오	거래
	당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		내용
	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	시해려 제 6 ㅈ 제 4 하	UI0
11.	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기재
	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	제 5 호	서류
	서류		
10	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
12.	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	제 6 호	
13.	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	

	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	제 7 호
14.	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 명서,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 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

- 2.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.품의.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.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·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.
- 3.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로부터 3 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한다.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 는 중지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위탁내용 확인 요청서

1. 원사업지	자와 수급사임	 걸자								
원사업자	사업자명					록번호 등록번호				
(수신인)	대표자성명	ı			<u></u>	전화번호	:			
	주소									
	사업자명	<u> </u>				록번호 등록번호				
수급사업자	대표자성명	i			전화번호				-	
(발신인)	주소									
	담당자	성명			소속			전화번	. 호	
2. 위탁일시	시, 작업을 기	기시한	담당자			1				
위탁 일시		,	직업을 지시한 담당자	성민	병		소속		직위	
3. 위탁 내	- 용 (증빙자료	- 실가 있	는 경우 첨부	<u>i</u>)						
1) 목적물	:	위	탁받은 작업	의 1	내용	 등				
2) 하도급	대금		금액, 지급방법	i, 入	[]급기	일 등				
3) 목적물의	긔 인도	YI	기 및 장소	믕						

4) 목적물의 검사	검사 방법 및 시기 등
5) 하도급대금의 조정	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
6) 그밖의 사항	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, 수량, 제공일,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
이내에 회신하지 않는	대한 확인을 요청하며,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경우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년 월 일
업 🤊	체명대표이사(인)

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

1. 원사업지	다와 수급사(업자				
수급사업자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록번호 또는 등록번호	
(수신인)	대표자성명			전:	화번호	
	주소					
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록번호 또는 등록번호	
원사업자	대표자성명			전:	화번호	
(발신인)	주소					
	담당자	성명		소속		전화번호
2. 수급사업	법자가 확인	을 요청	l한 사항			
위탁 일시						
위탁 내용	목적물,	하도급	대금, 목적물	물의 인도	E, 검사, 대	금의 조정 등

3.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	
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.	
년 월 일	
주식회사 오리온 대표이사(인)	

하도급대금 감액 서면

1.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								
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H번호 또는 목번호			
원사업자	대표자성명			전호	화번호			
	주 소							
	담당자	성명		소속			전화번호	
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번호 또는 록번호			
수급사업자	대표자성명			전호	화번호			
	주 소							
	담당자	성명		소속			전화번호	
2. 감액 내용	용 (증빙자료	!가 있	는 경우 침	년부)				
1) 감액 시	l유	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						
2) 감액 기준		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						
3)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			위탁 목 물량	적물 중0	베서 감액의	대싱	:OI 되는 구	-체적인

4) 71011 7011						
4) 감액 금액 	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					
5) 공제 등 감액방법	선급금,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					
6) 그 밖의 사항	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					
_, _, _, _, _, _, _, _, _, _,	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.					
위의 서면 기재사항(네도 어エᆸ네ద를 심작암을 확인합니다.					
위의 서면 기재사항(네도 아돕네ద들 컴퓨터를 확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

기술자료 요구서

1.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								
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변호 또는 록번호			
원사업자	대표자성명			전 <u>:</u>	화번호			
	주 소							
	담당자	성명		소속			전화번호	
	사업자명			법인등록 사업자등	번호 또는 록번호			
수급사업자	대표자성명			전 <u>:</u>	화번호			
	주 소							
	담당자	성명		소속			전화번호	
2. 기술자료	요구 관련	사항	(증빙자료기	가 있는	경우 첨부))		
1) 기술자료 내역		요구하는 기술정보·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(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)						
2) 요구 독	유 적	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						
3) 비밀유지()	세 관한 시항	-	호간 체결(부분을 비밀					기술자료 중 으로 적시

4) 권리 귀속 관계	i)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, (ii)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, (iii)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, (iv)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
5) 대 가	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
6) 인도일 및 인도방법	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,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
7) 그 밖의 사항	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, 기술자료 요구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
요구시 위 사항을 싱	오리온과 수급사업자 <u>는</u>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,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를 요구하는
	년 월 일
	원 사 업 자 : 주식회사 오리온 대표이사(인) 수급사업자 : 업체명대표자(인)